#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9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신영대

강준현 • 정동영 • 이성윤

한병도 · 김윤덕 · 이춘석

이원택 · 안호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 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18세이상 인구로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인구로"를 "18세 이상의 인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획정기준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둘 이상의 자치구 또는 시·군으로 획정된 국회의원지역구 중 일부지역만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 2. 제1호를 제외한 국회의원지역구 :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①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	
역 • 지리적 여건 • 교통 •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	1
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	
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u>인구로</u> 한다.	<u>1</u> 8세 이상의
	<u>인구로</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②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u>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u>	<u>다음 각 호의 획정기준을</u>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u>한다</u> .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둘 이상의 자치구 또는 시·군으 로 획정된 국회의원지역구 중 일부지역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2. 제1호를 제외한 국회의원지 역구: 획정기준의 인구상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선</u>